



제259회 임시회
2007. 4. 19

전문위원 검토보고

- 총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사회위원회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4월 9일
- 회부일자 : 2007년 4월 11일

□ 제안 이유

- 1980년 80병상으로 건립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노후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대두로 현대화 사업 필요성제기
-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 기업도시 등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 신축사업 추진결과 '07년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을 국비 50%, 도비50%의 재원 부담률에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 도 액 : 57,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 자금계획 : 국비(28,550백만원), 지방비(28,550백만원)
- 의무부담액 : 28,550백만원(한도액의 50%)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주무관청(충청북도)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검토 의견

1. 검토배경

-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으로 확정되어 2007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무부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하고자 함.

※ BTL 사업이란 ?

-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의료원 시설을 건설한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임차 사용하고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채무부담과 예산외 의무부담과의 비교

구 분	채 무 부 담	의무부담(예산외)
의 의	년도내 사업을 맡고 다음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상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에 의무부담을 하는 계약
지방의회 의결형태	예산안에 포함	단독 안건
근거법령	자치법 제115조 재정법 제35조	자치법 제35조
예산집행 유무	차후년도부터 예산집행	예산집행 없음

3. 검토결과

- 충주의료원은 지난 1980년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그 간 지역사회를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였음.

- 그러나, 의료원 시설의 노후와 기업도시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많은 의료수요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기획예산처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시행지침’에 의거 의무부담 행위를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로 처리할시 향후 예산을 의회에서 미의결시 계약자(사업자와 자치단체)간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안, 동사업의 추진상 사전 이행절차 여부, 도재정에 미칠 영향으로 앞으로 도에서 예견하고 있는 BTL사업의 추이, 타 사업으로의 확대시 재정지원 방안, 도재정의 채무액 비율, 동일사업의 타시도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의무부담행위로 처리할 경우와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할 경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비교설명이 필요함.